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5. 31 선고 2023가단12238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10.

판 결 선 고 2024. 5. 3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20㎡를 인도하고,
나. 17,550,000원 및 2023. 11. 26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월 4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한웅희

별지